#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0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윤종오·복기왕·정혜경

황운하 · 김준혁 · 전종덕

임미애 · 용혜인 · 박홍배

이용우 • 박수현 • 장종태

의원(12인)

####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이륜차 음식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 음.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음식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며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이는 사업자와 배 달종사자 간 계약이 사업자 일방이 제시하는 약관에 의해 이뤄지고,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의 정보 부재에 기인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이 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종사자와 시민 의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 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해 지능 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 고, 이해당사자들이 심의·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과 생활물류서비 스산업종사자가 표준계약서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 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관리하고 준수해 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송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배달요금 및 평점제도 등의 기준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
  -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이 공 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 는 경우 협의에 응해야 함(안 제17조의2제2항).
  -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배송 등의 업무 이력, 배달료의

구성 및 지급 등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3항).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 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 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제1 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등에 가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 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효율적 교육을 위해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정 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 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
  -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

- 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적정배달 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 3)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는 운송수단의 유지·관리·운영 비용, 종사자 노무비 등 비용과 종사자의 시간당 배달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8).
-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
- 5)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 19조의10).
-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 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 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 한 프로모션을 방지함(안 제36조제1항제4호).
- 아.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와 맺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해 지하지 않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과 표준계 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1조제1항제9항의4 및 제9항의5).

법률 제 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제19조의7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9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배달료를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관리 및 준수사항 등)
  -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배달요금 및 평점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 및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 2. 배차방식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배송업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제3항에 따른 배차방식 등이 공 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협의에 응해야 한다.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배송 등의 업무 이력, 배달료의 구성 및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1항 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 우
-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 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등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 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의2(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의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 제19조의7(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

-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8(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 하다.
  - 1. 운송수단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비용
  -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
  -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평균적인 배달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적정배달 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19조의9(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 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 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택배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모든 화물
  -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품목
  - ②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9조의10(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의 지급 및 부 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 도한 프로모션 방지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 에 제9호의4 및 제9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8.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
	료"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의 보
	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
	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제
	19조의7에 따른 생활물류서비
	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19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
	한 배달료를 말한다.
<u>&lt;신 설&gt;</u>	제1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의 관리 및 준수사
	항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차방
	식, 배송시간 제한, 배달요금

- 및 평점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성실하게 설명 하여야 한다.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와 운송 위탁계약 및 근로계 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 2. 배차방식 등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의 배송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차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위한 협 의를 요청하는 경우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협 의에 응해야 한다.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종사자가 배송 등의 업무 이 력, 배달료의 구성 및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 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 지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만,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 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생략)<신 설>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체결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수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산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 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 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 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u>제3장의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u> <u>달료</u>

제19조의7(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적 정배달료에 관한 중요 사항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

#### 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
-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 표하는 위원
- 3.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를 대 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 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 <u>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u> 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 제19조의8(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 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 료를 심의・의결한다.
  - 1. 운송수단의 유지, 관리 및운영에 관련된 비용
  -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 무비용
  -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부 담하는 사회보험 비용
  -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 자의 평균적인 배달조건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적정배달 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 정배달료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

   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택배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모든 화물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②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 품목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 사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 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 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 영업점 및 <u>생활물류서비스</u> 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신고센터)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 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 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 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표준계약서) ①
생활물류서비스종사
자는 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
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 략) <u><신 설></u>

(2) (2) (2) (2)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u>.</u>
1. ~ 3. (현행과 같음)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
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프로모션 방지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u>.</u>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
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
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u>영업점</u>
<u> &lt;신 설&gt;</u>	9의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u>영업점</u>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